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*에 따른 -

여성복지관 강사·수강생 코로나19 확진 대응방안

* (제13-3판, '23. 6. 1.) 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

□ 확진환자

- 정의 :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대응방안 : 강의·수강 제한 5일
 - (강의·수강 제한) 검사일(검체채취일) 포함 5일차까지 제한(6일째 가능)
 - ※ 예) 2. 1. 검사일 → 2. 6. 강의·수강 가능 * 검사일(검체채취일)포함 5일차 해제
 - (강의·수강 참여) 제한기간 다음날부터 참여 가능하나, 3일 간 주의 권고(KF94 마스크 상시 착용, 다중이용·감염취약시설 이용 제한, 사적모임 자제)
 - ※ 확진환자는 여성복지관에서 사전 연락 필수
 - (강 사) 강좌 담당주무관에게 연락
 - (수강생) 강사에게 연락

□ 접촉자[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]

- 범 위
 - 확진환자의 동거인 [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(가족, 친지, 친구 등)]
 - 여성복지관에서 확진환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한 강사와 수강생
- 대응방안
 - (확진환자의 동거인) 강의·수강 제한 없음
 - ※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받고, 반드시 마스크 착용. 확진 환자로 진단될 경우 강사는 여성복지관 강좌 담당 주무관에게 수강생은 담당 강사에게 즉시 연락
 - (확진환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한 강사, 수강생) 강의·수강 제한 없음

□ 수강생 출결 처리

-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수강 제한으로 강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 처리(격리해제 후 3일간 출석 못한 경우에도 같음)
- 이외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도 출석 인정 가능
 - ※ 강사 또는 교육팀에 사전 연락 필수